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11010-*AW*

시행일자 1997. 4. 4.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i>김철수</i>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i>홍</i>	
법 계 계 장	<i>김철수</i>	
기안	김철수 <i>1</i>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0(목).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훈령제 15호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0(목)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3호. 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건설행정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4. 10(목).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3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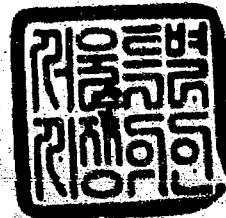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안

1. 제정이유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그 소관업무로 지정하는 사항을 재결 또는 처리함(안 제2조).
- 나.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회의의 주재 및 재결에 관한 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 및 보조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회의소집절차·현지조사·안건설명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마. 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인으로 구성함(안 제11조).
- 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12조).
- 사. 위원회가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13조 및 별표).
- 아. 회의록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토지수용법 및 같은법시행령

※ 법 제3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30조의2(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생략)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생략)

④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25조의4(운영 및 심의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문서처리, 심의방법과 기준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합 의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결('97. 2. 3)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안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토지수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의 재결
2.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협의성립 확인
3.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허가
4. 기타 토지수용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제 3 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제 4 조(직무대행)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의 주제, 재결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조계 위원(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
2. 당연직 위원(도로국장)
3. 대학교수 등 기타 위원중 연장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사항 이외의 위원장의 직무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파 서기 및 약간의 보조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획계장으로 하며, 보조인은 토지수용재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 6 조(회의참석 범위)위원회의 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참석 할 수 있다.

1. 간사·서기 및 보조인
2. 토지수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이 허용된 자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7 조(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피수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안건을 배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시 배부 할 수 있다.

제 8 조(현지 조사) ①위원회는 재결이 있기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수행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안건의 설명) ①회의 개최시 안건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안건설명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의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소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임한 사항과 토지수용법령에서 그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2 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문서처리) 위원회가 발송 또는 접수하는 문서의 처리는 별표1에 의한다.

제 14 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분	건 명	전결권자		
		위원장	당연직 위원	간 사
수용재결	1. 재결신청서 접수 2. 재결신청서류 공고(지시 등) 3. 감정평가의뢰 4.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기 일 통지 5. 재결서 6. 재결서 송부 7. 재결신청서류 보완 8.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9.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이의신청	1. 이의신청서 접수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진달(경유)			○ ○
일반문서	1. 일반문서 접수 2. 민원서류 접수·처리 3. 이의신청 관련자료 징구			○ ○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8372 / 전송 731-8374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 (시청본관: 5층) 담당 : 박병현

문서번호 건행 58342- 777

시행일자 97. 4. 4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무담당관 3		지시	
접수	일자시간	96. 4. 4	결재공람	박병현
	번호	1315		법재계장 201
처리과				
담당자				

제목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안 조치외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안 6부. 끝.

건설 행정 과 장
 건설 행정 과 장 *박병현*